

# K-Cash 가맹점 약관

## 제1조(목적)

이 약관은 K-Cash 회원과 K-Cash 가맹점이 K-Cash를 이용하여 거래를 함에 있어 가맹점의 거래은행인 하나은행(이하 ‘은행’이라 합니다)과 가맹점간의 권리·의무 등 제반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## 제2조(정의)
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. ‘K-Cash’란 회원이 접속회로(IC, Integrated Circuit) 칩(Chip)이 내장된 전자식 카드에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를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하였다가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5호에서 정하고 있는 전자화폐를 말합니다.
2. ‘회원’이란 K-Cash 회원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기관으로부터 K-Cash접근매체를 발급받은 자(법인을 포함합니다)를 말합니다.
3. ‘가맹점’이란 K-Cash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이 약관에 따라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은행으로부터 가입을 승인받은 업소, 시설 등을 말하며, 온라인 가맹점을 포함합니다.
4. ‘발행기관’이란 K-Cash 회원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K-Cash접근매체를 발급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말합니다.
5. ‘전자적 장치’란 K-Cash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, 자동입출금기, 지급용 단말기, 컴퓨터,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하며, ‘지급용단말기’란 K-Cash를 수용할 수 있는 보안장치가 적용된 구매관련 모듈(PSAM, Purchase Secure Application Module)이 설치된 가맹점의 전자적 장치를 말합니다.
6. ‘K-Cash거래’란 발행기관이 전자적 장치를 통해 K-Cash 및 이와 관련한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이 K-Cash접근매체를 통해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1호의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.
7. ‘K-Cash접근매체’란 K-Cash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회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,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접근매체를 말합니다.
8. ‘전자문서’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작성, 송신·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.
9. ‘거래지시’란 회원이 K-Cash 회원약관에 따라 발행기관 및 은행에 K-Cash 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.
10. ‘오류’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없이 K-Cash거래가 이 약관, K-Cash 회원약관 또는 회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.
11. ‘가치저장’이란 회원이 K-Cash 판독기 기타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K-Cash접근매체에 온라인으로 금전적 가치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.
12.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## 제3조(계좌신고 의무 등)

- ① 가맹점은 대금결제 및 은행과의 거래를 위하여 가맹점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를 가맹점 가입신청시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한 예금계좌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② 가맹점은 지급용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급용단말기의 구입, 설치 및 유지 등의 비용은 가맹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.
- ③ 가맹점은 지급용단말기 설치시 가맹점 가입신청시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,

은행은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맹점이 해당 지급용단말기로 K-Cash를 충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.

- ④ 가맹점은 다른 가맹점 명의로 K-Cash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.
- ⑤ 가맹점은 K-CASH 로고가 표시된 가맹점 표식을 점포 내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 또는 게시하여야 합니다.

#### 제4조(지급용단말기의 사용)

- ① 은행은 가맹점에 K-Cash의 충급방법 및 지급용단말기의 사용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어야 하며 가맹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② 가맹점은 회원이 K-Cash 사용시 그 처리가 항상 순조롭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전산시스템의 기술적 안전조치 뿐만 아니라 지급용단말기 사용방법의 숙지, 유지 및 관리 등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.
- ③ 가맹점은 지급용단말기를 불법, 부정한 목적 등에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.
- ④ 가맹점은 지급용단말기의 보안장치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.

#### 제5조(K-Cash의 처리)

- ① 회원이 가맹점에서 재화 및 용역의 대금을 K-Cash로 지급하거나 K-Cash의 가치저장 및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점은 회원의 요구를 거부하여서는 안됩니다. 다만, 온라인 가맹점에서는 가치저장 및 환불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.
- ② 회원이 K-Cash로 지급한 경우 지급의 효력발생시기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가맹점이 지정한 지급용단말기에 도달한 때입니다.
- ③ 은행은 회원이 제1항에 의하여 가맹점의 지급용단말기를 통하여 가치저장 또는 환불한 경우 가맹점에 건당 1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합니다.

#### 제6조(K-Cash의 충급금지)

가맹점은 회원이 제시하는 K-Cash 또는 K-Cash접근매체가 위법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·제작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K-Cash 또는 K-Cash접근매체를 충급해서는 안됩니다.

#### 제7조(반품 등의 경우 대금처리)

은행은 회원이 K-Cash로 대금지급을 완료한 거래에서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하자 등으로 반품 또는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, 온라인거래는 가맹점이 은행에 대금환불을 요청하면 은행은 고객의 계좌로 환불처리하며, 그 밖의 거래는 K-Cash에 의한 대금지급을 정상적인 것으로 처리하며, 은행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이 경우 은행은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.

#### 제8조(거래지시의 철회 등)

- ① 회원은 제5조 제2항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.
- ② 회원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전자적 장치의 조작 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구매 이후 해당 지급용단말기에서 다른 거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K-Cash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③ 회원은 K-Cash로 온라인 가맹점에서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K-Cash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#### 제9조(회원과의 분쟁)

- ① K-Cash에 의한 거래로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모든 분쟁은 가맹점과 회원이 직접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② 회원과 K-Cash에 의한 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맹점은 이의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은행의 중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.
- ③ 제1항의 분쟁으로 발생되는 거래금액의 반환 등에 관하여는 회원과 가맹점이 처리하는 것으로 하며,

은행은 지급이 완료된 거래에 대해서는 제8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경우 이외에는 반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.

#### 제10조(손실부담 및 면책)

- ① 은행은 K-Cash 또는 K-Cash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,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가맹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과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합니다. 다만, 부정이체 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실액을 보상합니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.
  1. 천재지변, 전쟁, 테러, 또는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, 화재, 건물의 혼란, 또는 테러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
  2. 법인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)인 가맹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은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
- ③ 위·변조된 K-Cash 또는 K-Cash접근매체의 부정사용 조사를 위하여 발행기관이 요청한 조사에 가맹점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#### 제11조(거래내역 전송의무)

가맹점은 거래가 발생한 날로부터 은행 영업일(이하 ‘영업일’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3영업일 이내에 거래내역을 전송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온라인 가맹점의 경우에는 거래내역을 거래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송하여야 하며, 동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발생한 은행의 손해에 대해서는 가맹점이 보상하여야 합니다.

#### 제12조(수수료)

가맹점은 K-Cash 취급과 관련하여 가맹점의 사업자 등록증상의 업종구분에 따라 K-Cash로 결제한 금액에 업종별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을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하며, 동 업종별 수수료율은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바에 따릅니다.

#### 제13조(대금청구 및 결제)

- ① 가맹점은 회원이 결제를 완료한 금액에 대하여 제11조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지급용단말기를 통해 거래내역을 전송하여 은행에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.
- ② 은행은 가맹점이 청구한 매출대금에서 제12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가맹점이 신고한 예금계좌에 입금합니다.
- ③ 은행은 제2항의 금액을 청구일의 익영업일까지 지급합니다. 단, 온라인 가맹점에서 발생한 취소거래는 가맹점에서 취소거래를 전송한 날의 익영업일에 가맹점 예금계좌로부터 출금합니다.
- ④ 은행은 제5조 제3항의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K-Cash 가치저장 및 환불에 따른 수수료를 제2항에 따른 지급액에 추가하여 지급합니다.
- ⑤ 온라인 가맹점은 거래취소에 따라 당일 대금환불 해당액을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은행과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
#### 제14조(이용한도)

K-Cash에 가치저장할 수 있는 최대금액한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50만원으로 합니다.

#### 제15조(거래기록의 보존)

- ① 은행은 K-Cash거래의 내용을 추적·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을 5년간 보존합니다.

1.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K-Cash거래에 관한 기록
  2. K-Cash거래의 종류, 일시, 금액, 거래 상대방 및 예금계좌를 나타내는 정보
  3. 은행 등이 거래의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
  4. K-Cash거래의 신청 및 조건변경에 관한 사항
  5. 해당 K-Cash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종류,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및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
- ②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은 1년간 보존합니다.
1.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K-Cash거래에 관한 기록
  2.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
  3. 오류정정 요구 및 처리기

#### 제16조(오류의 정정 등)

- ① 가맹점은 K-Cash거래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은행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은행은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가맹점에게 알려야 합니다.
- ② 은행은 스스로 거래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가맹점에게 알려야 합니다.

#### 제17조(분실, 도난)

가맹점에 설치된 지급용단말기 등 전자적 장치의 분실, 도난, 은행의 과실없이 발생한 전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가맹점의 손실에 대하여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#### 제18조(가맹점의 모집 등)

- ① 은행이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영업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미 확인을 한 가맹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-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에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. 다만, 은행이 그 거래에 대하여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.
1. 분실되거나 도난된 K-Cash 또는 K-Cash접근매체에 의한 거래
  2. 위조되거나 변조된 K-Cash 또는 K-Cash접근매체에 의한 거래
- ③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가맹점에 알려야 합니다.
1. 가맹점 수수료
  2.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맹점의 책임
  3.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가맹점의 준수사항
- ④ 은행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호의 방법 중 제1호의 방법을 포함한 2 이상의 방법으로 가맹점에게 알려야 합니다.
1.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통한 가맹점에의 개별 통보
  2.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의 공고
  3. 은행의 본점, 영업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

#### 제19조(가맹점의 준수사항 등)

- ① 가맹점은 K-Cash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K-Cash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- ② 가맹점은 회원으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- ③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1.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K-Cash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(假裝)하는 행위
  2.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K-Cash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

3.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K-Cash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
  4.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
  5. K-Cash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
  6. 가맹점 가입으로 획득하는 일체의 유형 및 무형의 권리를 은행의 승낙 없이 양도, 전매 또는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
- ④ 가맹점이 아닌 자는 가맹점의 이름으로 K-Cash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
#### 제20조(변경사항 신고)

- ① 가맹점은 가맹점 계약시 신고한 상호, 대표자, 예금계좌 등의 중요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② 가맹점이 제1항의 신고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③ 가맹점이 주소 및 상호변경 등의 신고를 소홀히 하여 은행으로부터의 통지가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 도달하여야 할 시기에 통지된 것으로 봅니다.

#### 제21조(상호협력)

가맹점과 은행은 전산장애 및 통신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K-Cash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합니다.

#### 제22조(유효기간)

이 약관은 가맹점이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은행이 승인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가맹점자격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은행 또는 가맹점으로부터 자격정지·상실 또는 해지 통지가 없는 한 다시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됩니다.

#### 제23조(자격정지·상실 및 해지)

- ① 은행은 가맹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가맹점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.
  1.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전자적 장치 등의 부정사용의 경우
  2. 지급용단말기의 무단 대여·양도·담보제공 등의 경우
  3. 이 약관이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
  4.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맹점의 재산이 압류, 가압류, 가처분, 강제집행, 임의경매 등의 대상이 되거나 기타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·대위변제대지급정보·부도정보·관련인 정보,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되는 등 가맹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② 은행은 가맹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.
  1.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 또는 제37조 제3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
  2.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3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로부터 서면통보가 있는 경우
  3. K-Cash 결제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
  4. 세무관서로부터 해당 가맹점의 폐업사실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경우
- ③ 은행이 가맹점 자격을 정지시킨 후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되는 경우에는 은행은 가맹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.
- ④ 은행은 제1항과 제2항의 사유 발생시 가맹점에 통지하며, 가맹점은 가맹점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⑤ 은행은 제1항부터 제4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우편 등 방법으로 30일전까지 가맹점에게 통보 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.

#### 제24조(자격정지·상실 및 해지시의 처리)

- ① 자격정지·상실 및 가맹점 계약 해지시까지의 K-Cash 이용대금결제는 제11조 내지 13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- ② 자격정지·상실 및 가맹점 계약 해지의 경우 가맹점은 가맹점 표식을 철거하여야 하며, 지급용단말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.
- ③ 은행은 자격정지·상실 및 가맹점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거래의 대금청구에 대하여 지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#### 제25조(약관변경 승인 등)

- ① 은행은 이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K-Cash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(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가맹점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로서 은행이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합니다. 이하 이조에서 같습니다) 및 은행 영업점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가맹점에 통지합니다.
- ② 은행이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K-Cash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 및 은행 영업점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가맹점에게 통지합니다.
- ③ 가맹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약관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직전 영업일까지 K-Cash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, 이 기간 안에 가맹점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.

#### 제26조(이의제기)

- ① 가맹점은 K-Cash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,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② 가맹점은 은행의 본점이나 영업점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은행은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가맹점에게 알려야 합니다.
- ③ 은행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,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하여 가맹점이 쉽게 알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.

**제27조(비밀보장)** 은행 및 가맹점은 법령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K-Cash 취급으로 알게 된 회원의 인적사항 및 계좌, 접근매체 및 K-Cash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회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으로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.

#### 제28조(약관 위반시의 책임)

은행과 가맹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,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.

#### 제29조(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)

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, K-Cash회원약관,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

#### 제30조(관할법원)

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